

의안 번호	18-11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
2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
: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의료급여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생략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 없음
- 4) 재정계획 심사 결과 : 적정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(2018. 11. 15.)
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8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2조의2(준속기한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김혜림
연락처	02-3153-6484